

기회발전특구 창업 업종의 범위(제39조의2 관련)

1. 건설업
2. 공연시설 운영업, 공연단체,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
3. 광업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
 - 가.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
 - 나.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
 - 다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
 - 라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
 - 마. 전시,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
5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)
 - 가. 광고업
 - 나.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 - 다.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 - 라. 연구개발업
 - 마. 전문 디자인업
7. 정보통신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.
 - 가.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 - 나. 뉴스 제공업
 - 다.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8. 제조업
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산업
 - 가. 기타 산업용 기계·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
 - 나. 보관 및 창고업
 - 다. 육상·수상·항공 운송업
 - 라. 육상·수상·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
 - 마. 화물 취급업
 - 바. 화물운송 중개·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
 - 사. 화물 포장·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
 - 아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
 - 자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

10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사업
11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
1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
13.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
 -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 투자중개
 - 나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
 - 다.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
14.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
15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16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
17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,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소형호텔업 및 의료 관광호텔업. 다만, 해당 호텔업과 함께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「관세법」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경우 그 카지노업 또는 보세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.
18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, 나목,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연장업. 다만,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 휴양업과 함께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 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골프장업은 제외한다.
19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
20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
21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